

## 【 5 】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

제출년월일 2007. 4. 3.

제출자 장재훈 의원외 6인

### ○ 제안 이유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의하여 야생동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에 근거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의 지원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 주요 내용

가.조례 제정 근거를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에 의함

(안 제1조)

나.농작물 피해관련 지원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안 제2조 2호)

다.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의 범위

(안 제3조)

라.농작물 피해액의 산정은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하여

산정함(안 제5조)

마.농작물 피해지원금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액의 80% 까지 지원할수 있음(안 제6조)

바.농작물 피해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하여 피해관련 지원

사항을 심의 토록함(안 제7조)

사.농작물 피해신고의 접수 및 조사 지원금의 지급은 읍.

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음(안 제11조)

##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에 근거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피해관련 지원) ①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작자별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피해액의 산정)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피해면적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작물의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 단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 ③ 제1항의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통장과 조사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피해액의 80퍼센트로 하고, 다른작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50%를 피해 지원금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지원금은 제7조의 심의 위원회 심의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관련 지원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주시의회 의원과 기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 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년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조례 제정시 소요예상액

---

□ 2006년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 총계 : 63건
- 멧돼지 및 고라니에 의한 피해
  - 농작물피해 : 35건 13,693㎡(4,142평)
    - ※ 1개소에 330㎡ 이하 피해면적 14농가 2,542㎡ 포함
  - 기타피해(분묘, 유휴농지, 엔실리지 포함) : 23건
- 기타 동물(비둘기, 까치 등)에 의한 피해
  - 농작물피해 : 3건 463㎡
  - 기타피해(전력시설 등) : 2건

□ 2007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상액

※ 멧돼지, 고라니 피해에 한하여 피해보상 할 경우 전년 대비 30% 증가 예상하여 산정

- 농작물 피해 예상면적 : 45건 17,800㎡(5,385평)
- 농작물 피해 산출금액 (고구마 기준 : ㎡당 1,386원)
 
$$\Rightarrow 17,800\text{m}^2 \times 1,386\text{원} = 24,670\text{천 원}$$
  - ※ 농작물별 ㎡당 단가 내역  
(벼 : 947원, 옥수수 : 1,180원, 고구마 : 1,386원, 콩 : 891원, 무 : 1,466원)
- 2007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조례 제정시 소요 예산액
 
$$\Rightarrow \underline{\underline{17,800\text{m}^2 \times 1,386\text{원} \times 0.8(\text{보상비율}80\%)}} = \underline{\underline{20,000\text{천 원}}}$$